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차 환경노동위원회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신설 〉

■ 김미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489호)

2024. 9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전문위원 손을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신설	3

I. 제안경위

2024년 7월 8일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%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,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76조의3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신설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¹⁾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12세 이하의 부 또는 모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피보험자 통상임금의 70%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의3 신설 등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보험료) ① (생략)	제6조(보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. 다만,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,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,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, 제75조·제76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) 김미애의원 대표발의. 의안번호 제2201487호.

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

<신설>

-----지급,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에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
가족돌봄휴직등 급여

제76조의3(가족돌봄휴직·휴가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“가족돌봄휴직등”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“구직급여”는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으로, 제71조 및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.

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-----

-----“출산전

제73조 중 “육아휴직”은 각각 “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”로 본다.	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”로----- -----“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”으로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14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, 해당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90일 한도에서 유급으로 하되, 국가가 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²⁾

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“가족돌봄휴직 등”이라고 함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12세 이하의 자녀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70%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돌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

2)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현행 기간은 각각 연간 최장 90일, 연간 최장 10일(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10일-한부모가족의 경우 15일- 연장)임.

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.

다만,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데, 가족돌봄휴직 등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동 급여의 재원이 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.

[표]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

(근로자 계정, 단위: 억원)

구 분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계	수입	118,508	198,171	199,831	187,371	185,117
	지출	139,452	204,566	210,463	180,507	170,407
	수지	△20,944	△6,395	△10,631	6,864	14,709
	적립금	73,101	66,466	55,828	62,611	77,319
실업급여 계정	수입	84,756	136,287	148,141	135,675	143,879
	지출	98,558	138,860	144,138	141,325	143,307
	수지	△13,802	△2,573	4,003	△5,650	573
	적립금	41,374	38,666	42,665	36,953	37,525
고용안정· 직업능력개발 계정	수입	33,752	61,884	51,691	51,696	41,238
	지출	40,894	65,706	66,325	39,182	27,101
	수지	△7,142	△3,822	△14,634	12,513	14,137
	적립금	31,726	27,800	13,163	25,658	39,794

※ 자료: 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

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38